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9. 25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체육청소년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9. 12.(목)
- 회부일자: 2024. 9. 12.(목)
- 상정 및 의결: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4. 9. 25.)

2. 개정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(2022. 2. 3.)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하고 전문체육 등 다양한 체육 분야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1. 주요내용

-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정비(안 제5조)
- 전문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(안 제10조)
-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(안 제29조)
- 체육단체 사전협의, 지도·감독 조항 정비(안 제30조 및 제31조)

4. 관계법령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
-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 「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」 개선과제 요약(2019. 8. 5. 의결)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(의안 2019-359호, 2019. 8. 5. 의결) 및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한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사항(2022.2.3., 법률 제18808호)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안 제10조에서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, 안 제29조에서는 달서구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, 안 제5조에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인원을 법령에 따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자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음.
-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체육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